

(20 년도)종합부동산세분납신청서

※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1. 신청인

성 명 (법인명)	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
주 소		전화번호	
		전자우편주소	

2. 신청내용

① 부과세액			②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		③ 분납할 세액(① - ②)		
종합부동산세	농어촌특별세	납부기한	종합부동산세	농어촌특별세	종합부동산세	농어촌특별세	④ 분납기한 (납부기한 + 6개월)

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, 「농어촌특별세법」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납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 성 방 법

- ① 부과세액: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종합부동산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과 납부기한(납부고지서의 송달지연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한)을 적습니다.
- ②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: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을 적습니다.
- ③ 분납할 세액: ① 부과세액에서 ②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차감한 종합부동산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을 적습니다.

※ 분납할 세액 계산

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	분납할 종합부동산세액	예 시
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	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	i)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450만원인 경우 - 종합부동산세 200만원(농어촌특별세 40만원) 분납
500만원 초과하는 경우	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1/2 이하 금액	ii)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1,000만원인 경우 - 종합부동산세 500만원(농어촌특별세 100만원) 분납

- 농어촌특별세의 분납금액은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.

- ④ 분납기한: ① 부과세액란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(토요일 및 일요일, 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,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 날)을 적습니다.

※ 납부기한이 12월 15일인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은 다음 연도 6월 15일입니다.